

건강한 국민, 신뢰받는 병원,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 합니다.



사
단
법
인

대한병원협회



수 신 병원장

참 조

제 목 의사 집단행동 관련 「의료법」 제33조제1항제3호 적용 협조 안내

1. 관련근거 : 가.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-1836(2024.3.20.)

나.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-2191(2024.4.4.)

2.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및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33조(개설 등)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외적용을 '심각'단계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.

< 「의료법」 제33조제1항제3호 예외 사유 인정 기준 >

- (적용대상) ①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기타 지역여건상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(시행기간)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'심각'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

끝.

대한병원협회장



대리 전세영 팀장 강대경 국장 장은혜

시행: 정책국 제2024-123호(2024.4.18.)

(04165)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/ www.kha.or.kr

TEL. 02)705-9235 FAX. 02)705-9229 E-mail: syjeon@kha.or.kr